

충청북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
조례안

검 토 보고 서



행 정 문 화 위 원 회

수석전문위원 신복순

충청북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안지윤 의원 등 7명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○ 발의일자 : 2025년 3월 4일

○ 회부일자 : 2025년 3월 5일

3. 제안이유

○ 본 조례안은 「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충청북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및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해 필요한 정책 및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 (안 제3조)
-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규정 (안 제4조)
-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자료 발굴·수집·보존 사업 등 추진 사업 규정 (안 제5조)
-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규정 (안 제8조)

5. 검토의견

가. 제정 필요성

- 본 조례안은 「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충청북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【참고】

- 우리 도를 제외한 전국 13개 시·도에서 유사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임.

시·도	서울	부산	대구	인천	광주	대전	울산	세종
제정일	24.03.26.	21.07.14.	17.10.30.	21.12.30.	23.02.23.	-	19.11.17.	-
시·도	경기	강원	충남	전북	전남	경북	경남	제주
제정일	24.12.31.	-	21.09.30.	23.12.08.	19.07.09.	18.12.27.	19.11.07.	20.05.13.

나. 주요내용 검토

- ‘안 제2조’는 정의 규정으로, 「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3조를 준용함.
- ‘안 제3조’는 도지사의 책무 규정으로,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할 것을 규정함.
- ‘안 제4조’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및 시행하도록 규정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함.
- ‘안 제5조’는 사업 규정으로,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▲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자료 발굴·수집·보존 사업, ▲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콘텐츠 또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관리, ▲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규정함.

- ‘안 제8조’는 협력체계 구축 규정으로,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기관을 명시함.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충청북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,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내용상으로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.